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도권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1185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사목 중 “인근 마을로의 이전”을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몰이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

제24조의3부터 제24조의10까지를 각각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11까지로 하고,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소재지,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 2. 상호
- 3. 대표자
- 4. 기술인력

③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보존, 검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24조의4(중전의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의3제1항”을 “법 제14조의5제1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4조의3제1항”을 “법 제14조의5제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4조의5(중전의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의3제2항”을 “법 제14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4조의3제2항”을 “법 제14조의5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4조의6(중전의 제2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의3제3항”을 “법 제14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7(중전의 제2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의4제1항”을 “법 제14조의6제1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4조의4제1항”을 “법 제14조의6제1항”으로, “공표방법 및 공표사항”을 “수거등 명령 사실의 공표”로, “제24조의5를”을 “제24조의6을”로 한다.

제24조의8(중전의 제24조의7)제1항 중 “법 제14조의4제2항”을 “법 제14조의6제2항”으로, “제24조의4제1항”을 “제24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4조의4제2항”을 “법 제14조의6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4조의9(중전의 제24조의8) 중 “법 제14조의4제3항”을 “법 제14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10(중전의 제24조의9)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조의7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의11(중전의 제24조의10)제1항 중 “법 제14조의6제1항”을 “법 제14조의8제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을 “법 제14조의8제2항 본문”으로, “결정하였을 때”를 “결정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4조의6제2항 단서”를 “법 제14조의8제2항 단서”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③ 법 제14조의5제3항 또는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2 중 “별표 1의3과”를 “별표 1의5와”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수도관망의 목표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4. 상수도관망의 점검·정비
-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취수시설이나 정수시설”을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수·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등)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돗물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의 사유로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이 중대하여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 환경부장관에게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야 한다.

③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속한 사고 대응, 상황 관리,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의 수립 및 이행의 지원
2. 사고의 대응·복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3. 사고의 원인, 피해규모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국민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에 필요한 조치

제49조의3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66조 중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4조의3 및 법 제14조의4”를 “법 제14조의5 및 법 제14조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법 제14조의5”를 “법 제14조의7”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3 중 “법 제14조의6”을 “법 제14조의8”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하는 일반수도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다만,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시·군의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하는 일반수도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제외한다.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 평가 및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등 검토 및 보완 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필요한 조치의 요청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같은 항 제1호의 광역상수도 사업 또는 지방상수도 사업 인가·변경인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인가·변경인가의 고시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의 인가 전 협의 및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전 협의
6.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과건
7.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같은 항 제1호의 공업용수도사업 인가·변경인가 및 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그 인가·변경인가의 고시
9. 법 제6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10.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
11. 법 제87조제3항제3호의3·제4호·제4호의2·제4호의3·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일반수도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로 한정한다)

제6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4.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에 대한 지원
5.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 운영·관리의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한 전산망의 구축·운영
6.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의 설치·운영
7. 법 제43조에 따른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사·설계 및 연구
8.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사·설계 및 연구
9.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운영
10. 법 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67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수도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

제68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5”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바목의 항목란 중 “6가크롬”을 “6가 크로뮴[chromium(6+)]”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6가크롬”을 각각 “6가 크로뮴”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VOCs”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6가크롬”을 “6가 크로뮴”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VOCs”를 “휘발성유기화합물”로, “6가크롬”을 “6가 크로뮴”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VOCs”를 “휘발성유기화합물”로, “6가크롬”을 “6가 크로뮴”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VOCs”를 “휘발성유기화합물”로, “6가크롬”을 “6가 크로뮴”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VOCs”를 “휘발성유기화합물”로, “6가크롬”을 “6가 크로뮴”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VOCs”를 “휘발성유기화합물”로, “6가크롬”을 “6가 크로뮴”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VOCs”를 “휘발성유기화합물”로, “6가크롬”을 “6가 크로뮴”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VOCs”를 “휘발성유기화합물”로, “6가크롬”을 “6가 크로뮴”으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VOCs”를 “휘발성유기화합물”로, “6가크롬”을 “6가 크로뮴”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부터 어목까지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VOCs”를 각각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며, 같은 호 저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6가크롬”을 “6가 크로뮴”으로, “VOCs”를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고, 같은 호 처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6가크롬”을 “6가 크로뮴”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VOCs”를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한다.

별표 1의3을 별표 1의5로 하고,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2분의 1의 범위”를 “2분의 1 범위”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목 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부터 4)까지를 각각 1)부터 3)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4조의3 제2항 또는 제14조의4제2항”을 “법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4조의5”를 “법 제14조의7”로 하며, 같은 호 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커목 및 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8호	100	200	300
터. 법 제7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9호	100	200	3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제49조의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②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49조의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49조제2항에 따른다.

[별표 1의3]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의3제1항 관련)

1. 기술인력	<p>가. 책임연구원급 2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이화학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5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이화학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7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p>나. 보조연구원급 2명: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화학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p>
2. 시설 및 장비	<p>가. 시설: 실험실</p> <p>나. 장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항목[무게, 온도, 탁도 및 색도(色度)]의 측정에 필요한 장비 2) 전처리(前處理)에 필요한 장비 3)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영향유기물질의 측정·분석에 필요한 장비 4) 금속류 등 유해영향무기물질의 측정·분석에 필요한 장비

※ 비고

1. “이화학분야”란 화학, 화학공학, 환경학, 식품학, 약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말한다.
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세부 요건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비의 세부 종류 또는 성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4]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24조의3제3항 관련)

1. 검사기관은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의 명의로 시험·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하면서 거짓으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3. 검사기관은 시료의 시험·검사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에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시료의 시험·검사 등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검사기록부에 시험·검사의 항목, 일자, 방법, 분석기기 조작조건, 전처리 사항, 계산식, 측정결과[검정곡선(calibration curve)을 포함한다] 및 기술인력을 기록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검사기록부의 작성을 마친 후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자기테이프·자기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관할 수 있다.
5. 검사기관은 위생안전기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재시험 실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6. 검사기관은 매년 시험·검사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별표 3의3]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제65조의2 관련)

1. 장비기준

가. 공통장비: 탁도계(측정범위: 0 ~ 10NTU) 2대

나. 개별장비

시설의 구분	장비명	종류 또는 측정범위	수량
정수장	전력품질측정기	디지털식	2대
	추적자 시험 분석기	불소이온식	1조
	슬러지농도계	디지털식	1대
	수압계	연속식	2대
	유량계	연속식	2대
	표준체 및 진동기	0.15 ~ 2.0mm	1조
	건조기	항온항습	1대
	펌프효율측정기	열역학적 방식	1대
	용존산소측정기	멤브레인 방식	1대
	자 테스터(jar tester) 및 표준자(2L 기준)	-	1조
	유동전하측정장치	연속식	1대
	침강시험장치	-	1대
	입자수 측정기(연속식)	2 ~ 1,000 μ m	1대
	부유물질 분석장치	-	1조

상수도관망	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1대
	수압계	연속식	10대
	유량계	연속식	3대
	관두개측정기	초음파식	1대
	누수탐사기	전자식	2대
	비저항측정기	4전극 방식	1대
	피복손상탐지기	DCVG 방식	1대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50mm 이하	1대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75mm 이상	1대
	잔류염소측정기	DPD 방식	2대
	관 내시경	-	1조

2. 기술진단의 실시 방법

- 가. 수도시설의 규모 또는 수준을 고려하여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별 진단항목을 포함하여 수행해야 한다.
- 나. 기술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 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분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생안전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607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을 정하고,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이 중대하여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환경부장관이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절차·방법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1186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